

Pet Animal Export Inspection Service

정우성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

Overview

지난 호에서는 Pet animal Export inspection service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microchip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간단히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Microchip은 현재 일선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microchip에 대해서 시술 날짜의 기록과 개체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microchip을 시술 받았으나 ID card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Microchip은 시술만 했을 경우 아무런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한다. 시술 후 data bank에 정보가 입력되어야만 유기견이 되었을 경우나 개체 증명이 필요할 경우 microchip을 통해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개체와 보호자에 대한 정보 등록 없이 시술만 했을 경우 microchip은 단순한 약세사리 혹은 피하내 존재하는 이물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ISO standard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microchip은 Virbac, Avid, Trovan, Sharewell등의 제품이며 모두 ISO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ISO 11784/11785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vid의 경우 번호 체계만 보아도 대번에 ISO 11784/11785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타의 제품의 경우 data bank system이 발달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고유 번호만 부여된 제품도 있다. 고유 번호만 부여된 제품을 특정기관에서 개체관리 차원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data bank system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대륙에 따라 입국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에 대한 입국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국가별로 입국하기 위한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microchip implantation을 통한 개체증명, 광견병 백신접종, 광견병 항체가 검사, 건강증명서를 골격으로 한다.

Europe

European Union에서는 2003년 5월부터 애완동물 해외출입에 관해 Pet passport law를 비롯해 개정될 검역법을 공고해왔으며 2004년부터 실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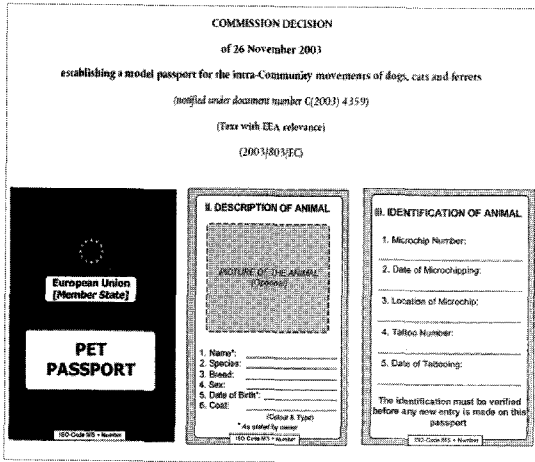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시행중인 유럽연합의 Pet Passport

European Union에서 이와 같은 애완동물 해외출입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European Union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들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으로 동반 입국할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유럽연합국 입국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동반 입국할 수 있는 pet은 종에 상관 없이 일회에 5마리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등급 외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유럽 내 국가들간 서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지칭되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 a. Third country not listed
- b. Unlisted third country
- c. High-risk country outside EU
- d. Non-qualifying country

유럽으로 입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ISO Standard Microchip Implantation(ISO 11784/11785)

: 유럽으로 동반 입국할 경우 microchip의 시술 일사와 제품 종류 등이 요구된다. 이미 시술된 microchip이 ISO Standard 제품이 아닐 경우 보호자는 microchip scanner(reader)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ISO Standard microchip이 아닌 제품을 시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microchip reader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경우 microchip를 시술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개체증명 실패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

2. Rabies vaccination

: 유통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inactive rabies vaccination에 요구된다. 광견병 백신 제품에는 각각 Batch Number(BN)와 Valid date가 있다. 유럽의 경우 유통 기한 내 백신제품의 접종여부, 백신 고유 번호 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inactive rabies vaccine은 Schering-Plough Animal Health의 Rabdomun™과 Virbac의 Rabigen mono가 있다. 국산백신은 모두 생독 백신이므로 해외 출국을 위한 조건에는 부적합하다. 생독 백신을 이미 접종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inactivated vaccine을 재접종 받아야 한다.

3. Rabies Antibody Titre Test

광견병 백신 접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광견병 항체가 측정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승인 Rabies Antibody Titre Test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반드시 승인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만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럽에서 승인한 검사기관이 없으므로 외국으로 혈청 검사를 의뢰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외화손실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요코하마 검역원 등에서 검사기관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3월에 2개의 검사기관에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은 유럽전역에 같은 list가 공고되었으며 각국 MAF home page 또는 National Quarantine home pag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검사결과가 기준치(0.5IU/ml) 미달일 경우 revaccination and retest가 제시된다. 검사결과 미달로 인한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재검사로 인해 지연되는 기간만큼 출국 일이 지연된다.

4. Blood collection date로부터 출국일까지 일정기간 대기

4-1 Blood collection date로부터 90일 대기를 요구하는 국가

: UK, Ireland를 제외한 유럽국가

4-2 Blood collection date로부터 180일 이상 대기를 요구하는 국가

: UK, Ireland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위해 채혈한 날짜로부터 일정기간(90일-180일) 경과 후 출국이 가능하다.

5.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건강증명서의 경우 EU에서 배포한 서식이 있다. 최종적으로 개체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증명서의 자격을 가지는 서류이므로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건강증명서와 함께 광견병 접종증명서 원본, 항체가 검사결과서 원본, 구충 증명서(UK, Ireland, Sweden, Malta, Finland의 경우 필수요건)를 같이 지참해야 한다. 모든 증명서는 영문 또는 해당국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7. 검역증 발급

8. 출국

9. 해당국에서의 검역

UK, Sweden, Ireland, Malta 이외의 유럽국의 경우 입국 후 바로 Pick-up이 가능하다.

그러나 UK, Sweden(8개월), Ireland, Malta의 경우 입국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검역이 의무사항이다. 6개월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통상 6개월 검역을 실시한다. 단지 여기서 보호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계류 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간인 것과 계류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다.

Oceania

a. Australia

투견 종류는 입국할 수 없으며 한국은 category 4로 분류되어 30days quarantine을 적용 받는다. 만약 투견종류의 입국을 희망한다면

AQIS(호주검역검사청)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한다.

a-1. Microchip implantation

호주는 ISO standard를 기본으로 하나 Avid, Trovan, Destron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a-2. Inactivated rabies vaccination

3개월령 이상의 연령에서 출국 1년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광견병 접종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합격할 경우 AQIS로 수입승인 신청서 송부시 첨부서류 혈청 검사 결과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3. Rabies antibody titre test

출국 전 150일 이전에 실시한다.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을 150일 이상 가지더라도 30일의 검역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반면 출국 전 150일 이후의 시점에서 혈청검사를 한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검역기간이 30일에서 추가된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출국예정인 강아지가 5월 1일 이전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6월 1일에 실시할 경우 강아지는 호주에 도착해서 30일의 기본 검역기간에 30일의 추가검역을 적용 받아 총 60일의 계류기간을 가지게 된다.

a-4. Apply for a permit to import

광견병 접종 증명서(영문판) 사본,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서 사본, application form을 호주검역원으로 송부한다. 송부한 서류에 대해 심사 후 import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다. Import permit은 Veterinary Certificate A(임상수의사용), B(검역원용)로 구성된다.

a-5. General Vaccination

출국 전 1년 이내, 출국 전 2주전에 실시한다. Kennel cough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

도착해서 보호자 부담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개의 경우 Leptospira검사와 관련하여 주사 접종일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접종일과 leptospira검사일이 근접한 경우 leptospira test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a-6. Additional test for dogs only

개의 경우 출국일 전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에 Ehrlichia canis, Brucella canis, Leptospira canicol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a-7.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 treatment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실시한다. Cestode, nematode에 대한 검사를 하고 구충한다. 이에 대한 증명서도 작성하는 것이 추천된다.

a-8. Veterinary certificate A and B in original import permit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A는 임상수의사가 작성을 하며 B는 인천공항검역원에서 작성한다.

a-9. 검역증 발급

a-10. 출국

a-11. 출국 전 지정한 계류장에 도착
도착 당일엔 면회가 불가능하다.

a-12. 30days quarantine

계류 기간 동안의 보호자 면회는 특정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Sydney계류장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에 서 3시 30분 사이의 시간만 면회가 허용된다.

a-13. Pick-up

B. New Zealand

투견 종류는 입국할 수 없으며 한국은 30days quarantine을 적용 받는다.

b-1. Microchip implantation

뉴질랜드는 ISO standard를 기본으로 하나 ISO standard가 아닐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Scanner(reader)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b-2. Inactivated rabies vaccination

3개월령 이상의 연령에서 출국 1년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광견병 접종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합격했을 경우 MAF로 수입승인 신청서 송부 시 첨부 서류 혈청 검사 결과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b-3. Rabies antibody titre test

출국 전 180일 이전에 1회, 출국 전 30일 전에 1회 실시한다.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을 1800일 이상 가지더라도 30일의 검역기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반면 출국 전 1800일 이후의 시점에서 혈청검사를 한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검역기간이 30일에서 추가된다.

b-4. Apply for a permit to import

광견병 접종 증명서(영문판) 사본,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서 사본, application form을 MAF로 송부한다. 송부한 서류에 대해 심사 후 import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다. Import permit은 Veterinary Certificate A(임상수의 사용), B(검역원용)로 구성된다.

b-5. General Vaccination

출국 전 1년 이내, 출국전 2주전에 실시한다.

Kennel cough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호주에 도착해서 보호자 부담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개의 경우 Leptospira검사와 관련하여 주사 접종일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접종일과 leptospira검사일이 근접한 경우 leptospira test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

b-6. Additional test for dogs only

개의 경우 출국일 전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에 Ehrlichia canis, Brucella canis, Leptospira canicola, heartworm(microfilariae test and antigen test)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의 test후 출국일 전으로 10일 이내에 Babesia antigen test를 실시한다.

b-7. Fecal examination

출국일 전으로 30일 이내에 14일의 간격을 가지도록 2회에 걸쳐 분변검사를 실시한다.

b-8.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 treatment

출국일 전으로 21일 이내에 cestodes에 대해 praziquantel을 투여한다.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nematodes에 대해 pyrantel pamoate를 투여한다.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tick treatment를 실시한다.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심장사상충 예방용으로 투약을 받아야 한다.

b-9. Veterinary certificate A and B in original import permit

출국일 전으로 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A는 임상수의사가 작성을 하며 B는 인천공항 검역원에서 작성한다.

- b-10. 검역증 발급
- b-11. 출국
- b-12. 출국 전 지정한 계류장에 도착
- b-13. 30days quarantine
- b-14. Pick-up

Asia

a. Japan

2005년 6월 6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 의한 입국절차는 다음과 같다.

a-1. Microchip implantation

ISO 11784/11785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ISO standard가 아닐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scanner(reader)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a-2. Inactivated rabies vaccination and general vaccination(dogs only)

일본의 경우 광견병에 대해 3개월령 이상의 연령에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개에 대해서는 leptospirosis를 문제시 삼는다. 따라서 종합백신을 접종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가 요구된다.

a-3. Rabies antibody titre test

일본정부가 승인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항체가 검사로 한정한다. 일본정부가 승인한 검사기관은 유럽에서 승인된 검사기관과 거의 동일하다. 2005년 3월 11일에 일본 소재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Science in Biochemistry & Toxicology가 검사기관에 추가되었다. 혈청 검사는 blood collection date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선택사항으로 개에 대해 한정적으로 leptospira test도 추가할 수 있다.

a-4. Advance notification

광견병 접종 증명서, 항체가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일본 입국일 전으로 40일 이전에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번호를 부여 받는다.

a-5. Waiting for 180days from blood collection date

a-6. application form / Veterinary Certificate A and C

출국일에 근접하여 일본에서 공고한 application form을 작성한다.

Veterinary certificate는 A,B,C로 구성이 되나 한국에 해당하는 것은 A와 B이다.

a-7. 검역증 발급

a-8. 출국

a-9. Pick-up without quarantine period

기존의 법에 의하면 14일에서 180일간의 계류기간을 가지지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수출국에서의 대기기간을 늘리고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일본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보호자가 찾아갈 수 있다.

b. Taiwan

2005년 6월6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b-1. Microchip implantation

b-2. Inactivated rabies vaccination

b-3. Rabies antibody titre test

대만에서 승인한 검사기관에서의 항체가 검사로 한정한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승인 받은 검사기관이 없다.

b-4. Apply for import permit

b-5. Waiting for 6 months from blood collection date

b-6. 검역증 발급

b-7. 출국

출국하면서 광견병 접종 증명서, 항체가 검사 결과지, 건강 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증명서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b-8. 21days quarantine

b-9. Pick-up

c. Hong Kong

c-1. Microchip implantation

홍콩은 microchip에 대해 특이적으로 Avid chip만 인정한다.

c-2. Inactivated rabies vaccination

c-3. Apply for import permit

c-5. 검역증 발급

검역증 발급시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접종 증명서 및 종합백신 증명서를 지참한다.

증명서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c-6. 출국

c-7. 4months quarantine

c-8. Pick-up

America

USA, Canada의 경우 광견병 발생국가이며 입국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Hwii

출국전 준비사항에 따라 5days quarantine, 30days quarantine, 120days quarantine을 적용 받을 수 있다.

a-1. Microchip implantation

하와이의 경우 microchip에 대해 Home Again과 Avid만 인정한다.

a-2. Rabies vaccination

5-day-or-less quarantine을 희망하는 경우 2회의 광견병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

a-3. Rabies antibody titre test

OIE manual에 따른 항체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인정하며 문서는 미국의 Kansas Rabies lab과 Texas의 DOD Food Analysis and diagnostic Lab을 추천한다.

a-4. Apply for import permit

a-5. Waiting

항체가 검사를 위해 blood collection date로부터 90일 경과 후 출국할 경우 30-day quarantine을 적용 받으며 120일 경과 후 출국할 경우 5-day-or-less quarantine을 적용 받는다. 기타의 경우 120-day quarantine을 적용 받는다.

a-6. 건강증명서 발급

a-7. 검역증 발급

a-8. 출국

a-9. Quarantine

보호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4시 40분까지 면회가 가능하며 수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12시에서 1시 30분 사이만 면회가 가능하다.

a-10. Pick-up

